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유만희,
윤영희, 최호정, 황유정
의원(6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
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44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서울의 초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.
-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‘노키즈존’ 등 출산과 양육활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맞물려 저출생 현상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아동 및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을 확대하고 양육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·양육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“엄마아빠 행복주간”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해소하여 ‘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’을 만들고자 함.

- 또한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산·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 및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제3항 신설)

나.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·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
2. 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3.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

제7조의 제목 “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”을 “출산·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산친화적인”을 “출산 및 양육친화적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출산,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업
2. 출산,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
3. 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
업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엄마아빠 행복주간) ① 시장은 출산·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

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아버지 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·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 시장은 결혼·임신·출산에 불 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추진해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⑥ (생 략)</p> <p>제7조(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) 시장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 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.</p> <p>1. 출산장려를 위한 부모교육사 업</p> <p>2. 출산장려 및 양육관련 시민 단체의 지원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 성을 위한 지원</u></p> <p>2. <u>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 경 감을 위한 지원</u></p> <p>3. <u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출산·양육친화 사회분위 기 조성) ----- ---- <u>출산 및 양육친화적인</u> ---- -----.</p> <p>1. <u>출산,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 업</u></p> <p>2. <u>출산,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 원</u></p> <p>3. <u>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 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 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엄마아빠 행복주간) ①</u> <u>시장은 출산·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·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